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6회 임시회

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【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7.

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【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】

검 토 보 고 서

2024. 7. .
도시환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【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】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주차관리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7. 5.
- 회부일자: 2024. 7. 5.
- 검토기간: 2024. 7. 5. ~ 7. 9.(5일간)

2. 제안이유

- 송현1동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며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2025년 9월 건립 예정인 송현 복합센터 이용객도 함께 이용하는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취득대상 현황

위 치	지 목	편입면적 (㎡)	보상추정액 (백만원)	소유자	비고
송현동 295-70	대	201	1,200	개인 (심**)	건물 포함
송현동 295-71	대	124			
송현동 295-89	대	98			
대명동 1721-34	대	31		개인 (진**)	
소계		454	1,200	개인(2명)	

※ 부지평가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

나. 사업개요

- 위 치: 달서구 송현동 295-70번지 일원
- 규 모: A=454m²(주차대수 15면 정도)
- 사업기간: 2024. 7. ~ 2025. 8월
- 사 업 비: 1,650백만원(주차장특별회계)

총사업비	실시설계 용역비	공 사 비	보 상 비	비 고
1,650	30	420	1,200	

다.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'24. 5월 :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
- '24. 7월 : 공유재산 심의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비 편성
- '24. 8. ~ 9월 : 손실보상협의
- '24. 10월~'25. 1월 : 실시설계용역
- '25. 2. ~ 3월 : 사전 행정절차(일상감사, 계약심사 등) 진행
- '25. 3. ~ 8월 :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

4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인 송현동 295-70번지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하는 「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」 과 관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임.

-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2025년 8월까지 소요 총 사업비 16억5천만원(보상비 120, 설계비 3, 공사비 42)으로 송현동 295-70번지 일원 4개 필지 454㎡를 취득하여 주차면 15면을 조성하는 사업임.
- 따라서 본 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주변 지역이 단독주택과 원룸, 연립주택이 밀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연접하여 송현복합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센터 이용객들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 사업시행 시 부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의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